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튼튼한 국민건강보험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2025. 2.

h·well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

목차

I. 개요

1. 연말정산의 개념	1
2. 연말정산 대상	1
3. 신고 의무자	1
4. 신고 기한 및 적용 시기	1
5.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IV개선 안내 ...	2
6. 간이직급명세서와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처리기준..	2

II. 연말정산 신청 및 분할납부 안내

1. 연말정산 일정	3
2. 연말정산 신고 방법	4
3.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5
4.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발송	9
5. 연말정산 보험료 착오자 변경 신청	10
6.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 및 보수월액 적용시기	10
7.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 적용	11

III.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12

IV.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수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보수의 의미	15
2. 유형별 보수 구분	15

[참고1] EDI 보수총액 신고 주요 질의 사례	23
[참고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1
[참고3] 연말정산 관련 서식	32
[참고4] 관련 법령	35

I. 개요

1. 연말정산 개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

2. 연말정산 대상

가. (정산대상) 2024. 12. 31.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제외대상 >

-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 2024.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 단, 12월 취득월부과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임
- ▶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선원, 자동차 매매중사원, 관광안내원 등)
- ▶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 ▶ 별도부과관리사업장(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노조,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 ※ 별도부과관리사업장: 해당 기관에서 연말정산 자체 실시

3. 신고 의무자

가. 사업장의 사용자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4. 신고 기한 및 적용 시기

구 분		신고 기한	부과 월	보수월액 적용 시기
근로자		3월 10일까지	4월	당년도 4월 ~ 익년도 3월 (공교사업장의 경우, 보수인상률 반영)
개인 사업장 사용자	일반 사용자	5월 31일까지	6월	당년도 6월 ~ 익년도 5월
	성실신고 사용자	6월 30일까지	7월	당년도 7월 ~ 익년도 6월

5.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개선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사용자의 보수총액 신고의무 유지
 나. (주요내용)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에서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신설, '24.8월 개정, '25.1.1. 시행

[변경 사항]

기존	개선
'보수총액통보서'로 연말정산 처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보수총액통보서'로 연말정산 처리

다. (연계대상) 일반사업장 가입자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의 근무기간 등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

※ 연계대상이라고 해도 사업장에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신고내용으로 정산

라. (신고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

<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 대상 >

-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대상금액이 상이한 경우
 - (항목) 국외근로 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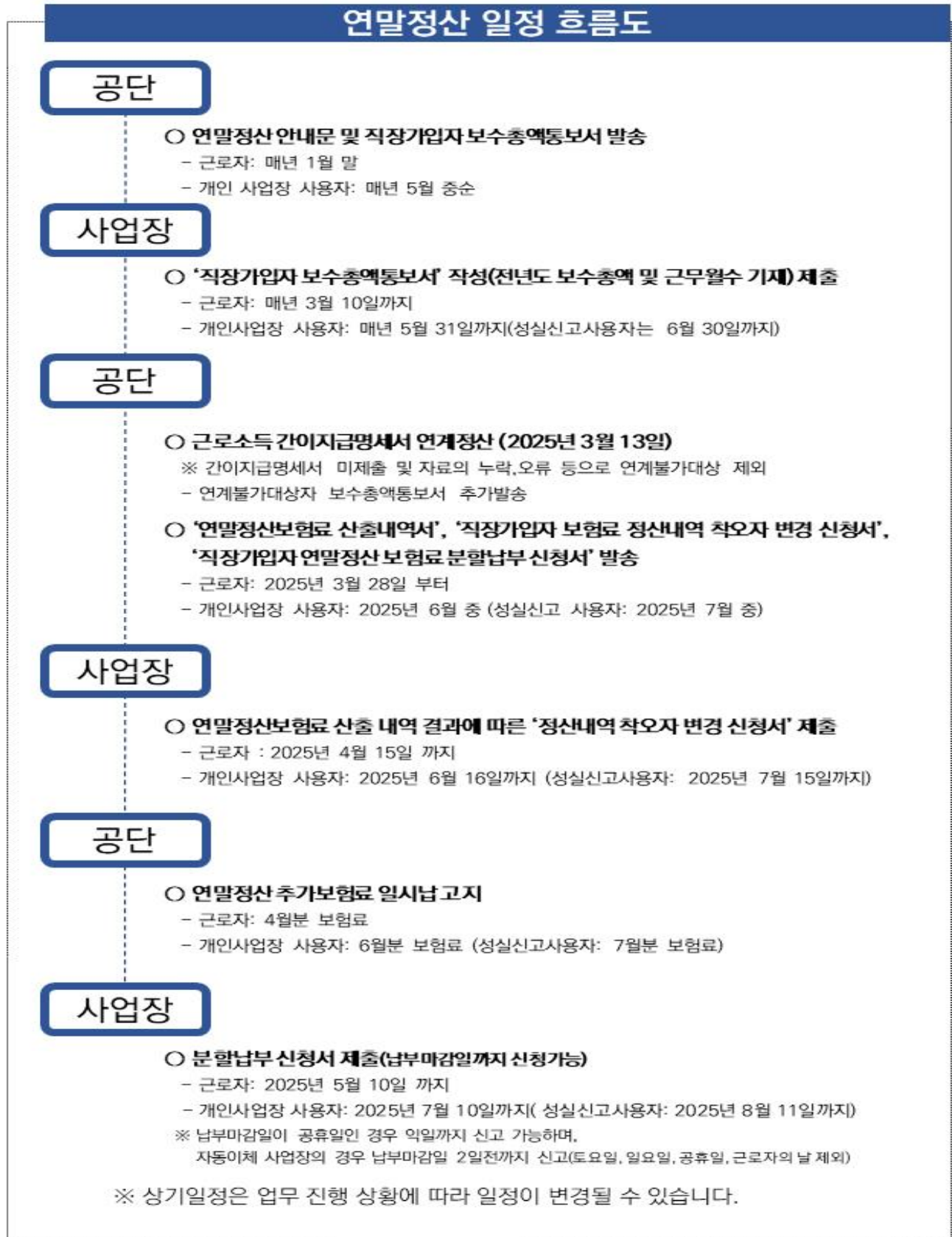
마. (유의사항) 9월 국세청 근로소득 확정자료 정산 시 국세청 과세기준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정산이 될 수 있음

6. 간이지급명세서와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처리기준

구 분		(공단)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미신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통보서로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로 연말정산 (연계 불가 시,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필요)
	미제출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필요

II. 연말정산 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1. 연말정산 일정



나. EDI 신고

○ 신고 방법

- ▶ (경로) 전체서식 → 신고(전송)/신청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화면에서 수신된 연말정산 대상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후 신고

< EDI 보수총액 신고화면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EDI서비스		임시저장	신고(전송)/신청	조회	출력	서식달기	도움말	전체목록 열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화면 상, 하단 중 화면 하단 조회된 대상자 선택 후, 화면 상단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항목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입력 사항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일	수신일련번호		※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에 따라, '24.5월부터 연말정산보험료는 일시담으로 고지되므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확인 후, 분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박선옥	02 - 484 - 1602	02 - 473 - 3167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회계	단위기관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								
합계	건강	요양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입사일 포함)	노란색 항목 입력 후, 엔터키 또는 수정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험료 부과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만 기재	
수정 이전 다음 파일내리기 파일올리기 대상자삭제 신규입력								
조회된 대상자 내역이 없을 경우, 상단 메뉴의 조회버튼을 누르셔서 검색 하신 후, 수신 문서를 열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문서 없을 경우, 관할지사에 보수총액통보서 재전송 요청 후 처리.) 입력완료 후 대상자현황 직책으로 변환해서 수정이 N->Y 로 변환.								
회계	단위기관	조회인원	수정인원	조회대상	전체	정렬방법	성명	
순번	성명	주민번호	증번호	자격취득일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가입자 부담분)		전년도보험총액	근무월수
					건강	장기요양	계	수정

다. QR 신고

- 신고 대상: 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을 활용하고 있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을 사용하는 업무대행기관

○ 신고 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제출(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3.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가. 보수의 범위 ... 상세 내역은 15p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수의 범위' 참고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며,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소득세법」제12조제3호차목·파목·거목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보수총액' 간편 작성 방법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표1】의 '⑮계'와 '⑯국외근로'의 합계액 기재
 - ※ 단, 비과세 소득 '⑮-1야간근로수당', '⑯비과세소득 계'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
 - ※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제외

나. '근무월수' 와 '정산월수' 개념

- 근무월수: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 근무월수 기재방법 >

- ▶ (근로자) 직장가입자 취득 기간의 보수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
- ▶ (사용자) 사업개시기간 동안의 보수총액 및 종사기간을 기재
 - ※ 단, 의료급여 기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간, 휴직기간은 제외

- 휴직 등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아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직위해제,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정산월수: 보험료가 부과된 기간(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음)

< 예시 >

▶ A근로자의 근무기간: 2024. 3. 20. ~ 2024. 12. 31.

- (근무월수) 3월부터 12월까지 기산 → 10개월

- (정산월수) 4월부터 12월까지 기산* → 9개월

* 월중 취득자는 다음 달부터 직장보험료로 부과

※ 단, 취득월부과 대상자는 취득월부터 정산월수로 기산

다. 기타 사항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함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총 보수와 근무월수로 정산

○ 휴직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은 정산 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보수만 합산하여 정산

○ 정산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로 정산

※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의료급여 기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 자격 및 건강보험 보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라. 사례별 연말정산 신고방법

①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여, 이중자격가입자인 경우

→ 사업장 각각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 ▶ A사업장 근무기간: 2024. 1. 1. ~ 2024. 12. 31. 보수총액: 42,000,000원
- ▶ B사업장 근무기간: 2024. 4. 20. ~ 2024. 12. 31. 보수총액: 21,000,000원
- (A사업장) 근무월수: 12, 보수총액: 42,000,000 / (B사업장) 근무월수: 9 보수총액: 21,000,000

② 정산연도 중 사업장간의 전·출입으로 근무처변동이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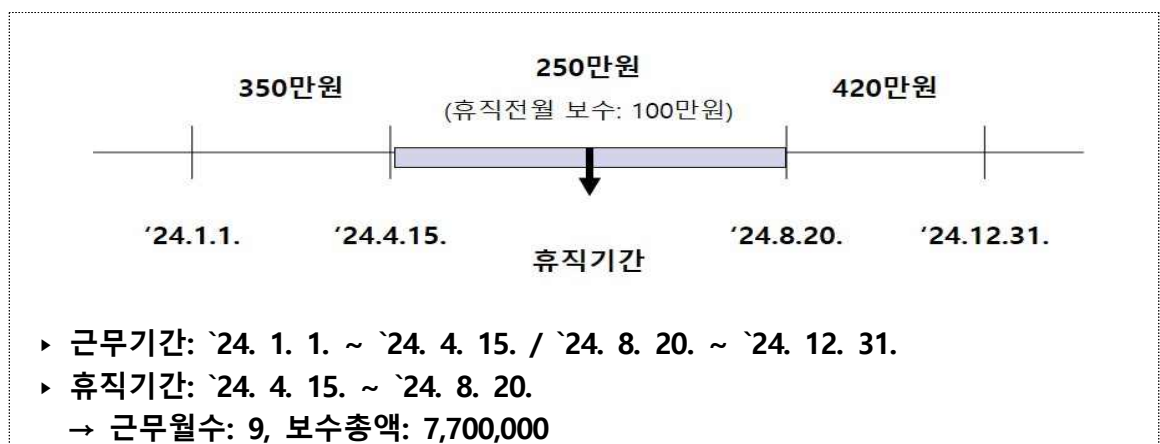
→ 현 근무지에서 정산연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 ▶ A사업장 근무기간: 2024. 1. 1. ~ 2024. 4. 5. 보수총액: 12,000,000원
- ▶ B사업장 근무기간: 2024. 4. 5. ~ 2024. 12. 31. 보수총액: 38,000,000원
- (B사업장) 근무월수: 12, 보수총액: 50,000,000

※ 단, 계열사 간 이동하여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보수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종전근무지는 퇴직정산하고, 현 근무지 소득만 보수총액으로 신고

③ '24년도 중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

→ 정산기간에서 고지 유예 기간 제외



④ 연말정산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

→ 퇴직정산 대상자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EDI의 경우, 보수총액통보서 대상자에서 삭제 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로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대상자는 별도 신고 불필요

⑤ '24. 12. 1.이전 입사하였으나, 취득 지연신고로 공단에서 발송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 (사업장)

→ 서면신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대상자 추가하여 신고

→ EDI신고: 공단에 요청하여 연말정산 대상자 등록 후, '보수총액통보서' 회신 받아 신고

▶ (공단) 연말정산대상자 등록 후 정산

⑥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구·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문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의 사용자 등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로 분리되나 법인의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정산 시기에 법인의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연말정산 함

※ 단, 법인의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로 보아 정산

4.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발송 ... 근로자 3월 말(본부일괄), 사용자 5월 말(지사개별)

가. 서면 신고

○ (대상) EDI 미가입 사업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소속지사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		단위사업장 :		회계 :		차수 :					
연도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산구분	2024년도 보수총액	근로 월수	보수월액	보험 구분	부과 보험료	확정 보험료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계	가입자부담 (건강+요양)	고지 유예
								건강							
								요양							
								건강							
								요양							

< 연말정산 반환 보험료 처리 >

- ▶ 정산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 이내인 경우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 보험료에 충당
- ▶ 정산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 초과인 경우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 보험료에 충당, 잔액은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환급금 지급

7.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 적용

○ 신청 기한

- 사용자가 추가 징수할 보험료 고지 당월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 신청

○ 분할납부 적용 기준

-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2회 이내로 분할 가능

○ 분할납부 차수 변경

- 1회 ~ 12회 이내에서 차수 변경 가능

III.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Q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A1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의해 재산정된 보험료 간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Q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 되나요?
A2	▶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매년 3월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처리하였으나, '25년('24년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에서 자료 연계를 받아 연말정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자료가 오류·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근무개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대상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항목) 국외근로 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등
Q3	모든 사업장이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계 정산 되나요?
A3	▶ 아닙니다. 공무원 및 교원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연계제외 대상사업장으로 기존과 같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및 교원은 공단과 국세청의 근무처변동등으로 자격관리방식등의 차이로 인하여 근무월수가 불일치하여 제외됩니다.
Q4	간이지급명세서 연계대상 사업장인데 기존과 같이 보수총액 신고 해도 되나요?
A4	▶ 네,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기존과 같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 으로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 됩니다.

Q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무엇인가요?
A5	▶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 상반기(1월~6월)자료는 7월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자료는 다음해 1월31일까지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제출
Q6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6	▶ 사용자가 국세청에 2025년1월31일까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며, 이후 신고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보수총액 신고금액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됩니다.
Q7	11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신고해야 하나요?
A7	▶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Q8	12월 3일에 입사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A8	▶ 2024.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는 2024년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Q9	귀속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A9	▶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하여 정산 합니다. ※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의료급여 기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은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Q10	근무월수와 정산월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10	▶ 근무월수: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및 보수포함 -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의 근무월수 및 보수 제외(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휴직일이 매월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월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직위해제, 무노동 무임금, 기간제교사의 방학기간 등)은 근무월수 및 보수에 제외 ▶ 정산월수: 전년도(귀속년도)에 보험료가 부과된기간(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음) 예) 2024. 1. 12.자로 입사하여 2024. 12. 31.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의 경우, - '근무월수': 보수가 지급된 1월~12월(12개월) - '정산월수': 보험료가 부과된 2월~12월(11개월)
Q11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11	▶ 당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Q12	고시적용 기간 동안의 보험료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12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총보수와 근무월수를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13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A13	▶ '휴직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은 정산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보수만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Q14	정산보험료 분할신청 시 금액을 어떻게 분할되나요?
A14	▶ 정산보험료는 분할신청 횟수로 균등분할 고지되며,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Ⅳ.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수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보수의 의미

- 보수란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임
 - 단,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동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 건강보험의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등

2. 유형별 보수 구분

- 식대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20만원(연간24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 2023년 1월부터 적용
- ▶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어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금은 과세이므로 보수에 포함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제외)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근로자 소유 및 임차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됨

○ **국외근로소득**(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및 북한지역 근로)

- ▶ 「소득세법」에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

○ **비과세(보수 제외) 학자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 및 시행령 제11조

-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및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
 -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 받는 것일 것
 -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대상에서 삭제(2014. 1. 1.부)되었고, 비과세 소득도 아니므로 보수에 당연히 포함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 ▶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재직기간 중 행사 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 다만,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법 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

※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임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보수 제외

기간(행사일)	비과세 기준
2021.1.1.~2021.12.31.	행사이익 3천만원
2022.1.1.~2022.12.31.	행사이익 5천만원
2023.1.1.~	행사이익 2억원, 기업 총 누적한도 5억

○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 ▶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인정상여로 확인되는 경우 보수에서 제외 (2015두37525)

※ 대표자, 공동대표자, 사실상의 대표자 모두 포함

○ 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 ▶ 2013년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보수에서 제외
- ▶ 퇴직예고수당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므로 보수에서 제외

○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제2016-이의-02327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을 뜻함

○ 해고예고수당

-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으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보며, 보수에서 제외

○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에 의거 지방의무이전기관 종사자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

- ▶ 연봉계약 체결 시 노·사간 합의(계약)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 이행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기간을 이행하였을 경우 선납한 근로소득금액 중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재 정산하게 되므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시 해당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

○ 출산수당·보육수당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창립기념일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금

- ▶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

○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판결문 상의 내용에 부당해고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을 시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 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음을 볼 수 없음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2020.2.11.시행 개정 전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보수에 포함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인 급여)

- 비과세 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
-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단, 생산직근로자는 제외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5억 이하

< 공장·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	
구내식당 등 취사 종사자	보안업무 종사자
건물관리 및 청소 종사자	구내이발, 세탁공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종사자	전화, 전신기 조작원
물품 및 창고관리 종사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노사 관계 종사자	수송운용관리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7조1항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아님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 연구보조비를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보수 포함
 - ※ 중학교이상은 연구보조비라는 수당으로 지급되고 초등학교는 보전수당, 보전수당 가산금 명목으로 지급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 등 종사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말(퇴직)정산 근무월수에 포함하므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면 '89 그 밖의 사유' 대상이므로 경감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퇴직)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됨을 주의
-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음은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아님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고 근무월수에도 제외(근무월수 계산 방식은 다른 휴직과 동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2021. 12. 31.개정)
→ 월 70만원(하한액) ~ 250만원(상한액)
- ▶ 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육아휴직수당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제외

○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및 시행령 제17조의3

-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원 교직원이 지급받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연 70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보수에서 제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수 포함
 - ※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

-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또는 단일세율에 의한 세액 정산 중 선택하여 국세청에 신고 가능
-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소득을 모두 보수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전체 근로소득에서 제외

* [정산 처리 예시]

- ▶ (예1) 보수가 월 200만원에 근무기간 12개월의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
 - 건강보험료: 141,800원 (보수×7.09%), 장기요양보험료 18,364원 (건강보험료×0.9182%/7.09%)
 - 총 160,160원 (건강보험료 141,800원+장기요양보험료 18,360원)
 - 사용자 부담분: 80,080원 (총 160,160원×50%)
 - **보수총액 신고 금액: 24,960,960원** {(보수 200만원 + 사용자 부담분 80,080원)×12개월}
- ▶ (예2) '24.1월~3월'까지 보수가 월 300만원 '24.4월~12월'까지 보수가 월 500만원인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
 - ('24.1~3월) 건강보험료: 212,700원 장기요양보험료: 27,546원 → 총 240,240원/월
 - ('24.4~12월) 건강보험료: 354,500원 장기요양보험료: 45,910원 → 총 400,410원/월
 - ('24.1~12월) 총 4,324,410원 (240,240원×3개월+400,410원×9개월)
 - 사용자 부담분: 2,162,205원 (총 4,324,410원×50%)
 - **보수총액 신고 금액: 56,162,200원** (보수 5,400만원 + 사용자 부담분 2,162,200원)

○ 우리사주

- ▶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임
- ▶ 우리사주 취득에는 개인(조합원) 출자에 따른 것과 법인 출연(금)에 의한 것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과세이연 선택 시 공제받은 과세이연금액은 인출연도 총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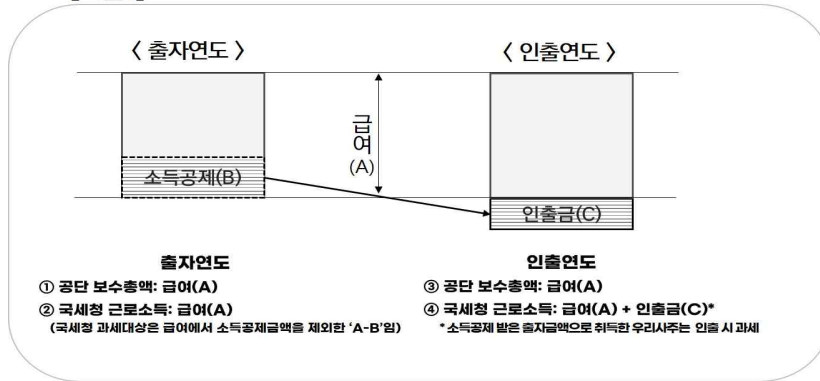
<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하여 우리사주 취득 시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후,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 시점에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후, 조합원이 해당 배정 주식을 인출 할 때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보수총액 신고 >

① 조합원의 출자로 우리사주 취득 시 출연금 소득공제 신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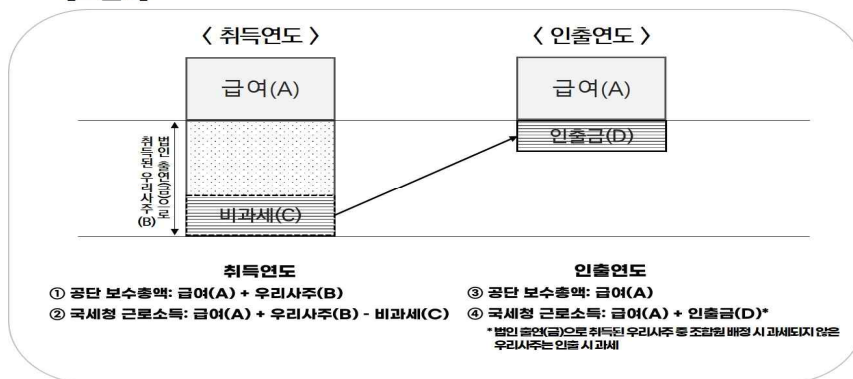
[그림1]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시점에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해당 인출금(C)은 출자연도 당시 보수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급여(A)만 보수총액으로 신고
- 공단에서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총 소득에 인출금(C) 포함이 포함되었을 때 ... [그림1]의 ④
→ 해당 인출금(C)은 개인 출자 당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포함됨을 증빙*하는 경우, 인출 시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 제외 가능
- *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출자, 인출연도),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주권인출내역서 등

②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비과세한 경우

[그림2]



-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된 우리사주가 조합원계정에 배정되면 그 배정 시점에 조합원은 배정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며, 이는 보수에 해당함
- 법인 출연(금)에 의한 우리사주 중 조합원 배정 시 과세되지 않은 우리사주는 인출 시 과세하는데, 해당 인출금(D)은 취득연도 당시 보수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급여(A)만 보수총액으로 신고
- 공단에서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 정산 시, 총 소득에 인출금(D) 포함 ... [그림2]의 ④
- 해당 인출금(D)은 우리사주 취득 당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포함됨을 증빙*하는 경우, 인출 시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서 제외 가능
- *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취득, 인출연도),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주권인출내역서, 자사주 배정내역 등

【목록】

- Q1)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하려는데 인증서가 안보여요 또는 인증서 오류가 나요
- Q2)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하려는데 화면이 닫히거나, 설치오류가 나요
- Q3) 보수총액 통보서 어디서 입력하나요?
- Q4) 보수총액 통보서 어떻게 입력하나요?
- Q5) 입력할 대상자가 많아요
- Q6) 대상자가 조회내역에 없어요
- Q7) 보수총액 통보서 받은 대상자와 신고할 대상자가 달라요
- Q8) 입력한 게 안보여요
- Q9) 신고했는데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
- Q10)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 Q11) 반송 처리된 건은 어떻게 재신고 하나요
- Q12) 퇴직자가 보수총액 통보서 명단에 있어요
- Q13)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보수의 범위, 대상자 확인 등 상세 기준 관련 상세내역은 공단홈페이지* 안내 또는 관할지사에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공지사항 →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Q1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하려는데 인증서가 안보여요. 또는 인증서 오류가 나요.

[【목록으로】](#)

A1) 어떤 EDI 서비스 사용하세요?

EDI 구분	문의전화	비고
사회보험 EDI(KT)	080-318-5306	KT고객센터
건강보험 웹 EDI	1577-1000	고객센터 내 IT 상담사

※ 전화 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Q2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하려는데 화면이 닫히거나, 설치오류가 나요.

[【목록으로】](#)

A2) 어떤 EDI 서비스 사용하세요?

EDI 구분	문의전화	비고
사회보험 EDI(KT)	080-318-5306	KT고객센터
건강보험 웹 EDI	1577-1000	고객센터 내 IT 상담사

※ 회원가입 문의: 1577-1000(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Q3 보수총액 통보서 어디서 입력하나요?

[【목록으로】](#)

A3) 어떤 EDI 서비스 사용하세요?

- (사회보험 EDI(KT)인 경우) 080-318-5306(KT 고객센터) 문의
- (건강보험 웹EDI인 경우) 다음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입력
 - 받은 문서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선택하여 입력
 - 받은 문서에 없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① 보수총액통보서 EDI 전송 요청 사업장
 - ② EDI 화면에서 전송요청 공단

(경로) 전체서식 → 신고(전송)/신청 →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 → '신청구분'에서 '보수총액통보서 신청' 선택 → 신고(전송)/신청 클릭

A4) 보수총액 통보서 입력방법 안내

- 조회 → 공단 수신 내역 선택 → 화면 상단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엔터(다음 대상자로 자동 이동)
- 입력 중단 또는 입력내역 확인 시 '임시 저장'
- 전체 내역 입력 완료 후, 상단의 '신고(전송)' 버튼 클릭

【 KT EDI 화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사회보험 EDI서비스

저장/송신 조회 출력 삭제 닫기 도움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입력방법
문서 조회 → 화면 하단 대상자 선택 → 노란표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수정 → 대상자 전체 확인 후 저장/송신

작성일 2024/01/23 일련번호 01 수신자수

작성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회 계	단위기관	자격취득(변동)일
					/ /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 요약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 (입사일 포함)** 수정완료 전년도보험료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만 기재

수정 이전 다음 파일생성 파일가져오기 대상자삭제 신규입력

참고사항
1. 조회된 문서가 없으면 '수신할'에서 확인해주세요.
2. '수신할'에도 없을 경우, 재송부 요청 또는 고객센터 문의

아래에서 해당하는 사람의 열을 선택하시며 개인별내역을 상세히 조회하세요

회 계	단위기관	조회인원	조회대상	정렬방법			
순번	성명	주민번호	증번호	자격취득일	전년도총보험료납부총액	건강전년도납부총보험료	요양전년

【 웹 EDI 화면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EDI서비스

임시저장 신고(전송)/신청 조회 출력 서식담기 도움말 전체메뉴 열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화면 상, 하단 중 화면 하단 조회된 대상자 선택 후, 화면 상단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항목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입력 사항은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일 수신일련번호 ※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에 따라, '24.5월부터 연말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므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확인 후, 분할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회 계	단위기관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 요약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입사일 포함)** 노란색 항목 입력 후, 엔터키 또는 수정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험료 부과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만 기재

수정 이전 다음 파일내리기 파일올리기 대상자삭제 신규입력

조회된 대상자 내역이 없을 경우, 상단 메뉴의 조회버튼을 누르셔서 검색 하신 후, 수신 문서를 열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문서 없을 경우, 관할지사에 보수총액통보서 재전송 요청 후 처리.)
입력완료 후 대상자변환 직책으로 변환해서 수정이 N→Y로 변환.

아래에서 해당 사람의 열을 선택하여 개인별 내역을 상세히 조회하세요.

회 계	단위기관	조회인원	수정인원	조회대상	전체	정렬방법	성명			
순번	성명	주민번호	증번호	자격취득일	건강	장기요양	계	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수	수정

Q5

입력할 대상자가 많아요.

[\[목록으로\]](#)

A5) 파일 신고 방법 안내

- 화면 중간의 '파일내리기' 버튼 클릭 → 파일 다운로드 →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 후 저장 → '파일올리기' 실행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화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EDI서비스			임시자장	신고(전송)/신청	조회	출력	서식담기	도움말	전제예능알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화면 상, 하단 중 화면 하단 조회된 대상자 선택 후, 화면 상단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항목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입력 사항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일	수신일련번호		※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예 따라, '24.5월부터 연말정산보통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므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확인 후, 분할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회계	단위기관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입사일 포함)	노란색 항목 입력 후, 엔터키 또는 수정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합계	건강	요양			전년도보험료 부과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만 기재				
조회된 대상자 내역이 없을 경우, 상단 메뉴의 조회버튼을 누르셔서 검색 하신 후, 수신 문서를 열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문서 없을 경우, 관할지사에 보수총액통보서 재전송 요청 후 처리.) * 아래에서 해당 사람의 열을 선택하여 개인별 내역을 상에서 조회하세요.									
수정	이전	다음	파일내리기	파일올리기	대상자삭제	신규입력			
회계	단위기관	조회인원	수정인원	조회대상	전체	정렬방법	성명		
순번	성명	주민번호	증번호	자격취득일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가입자 부담분)			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수
					건강	장기요양	계		수정

Q6

대상자가 조회내역에 없어요.

[\[목록으로\]](#)

A6)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누락자 처리방법 안내

- (연말정산 대상) 2024. 12. 31.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연말정산 대상으로 누락된 경우: '신규입력'버튼 클릭 후 대상자 처리

〈 연말정산 제외대상 〉

-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 2024.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단, 12월 취득월부과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임
- ▶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통용자, 군입대자)
-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선원, 자동차 매매중사원, 관광안내원 등)
- ▶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 ▶ 별도부과관리사업장(주한미군·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향운노조,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 별도부과관리사업장: 해당 기관에서 연말정산 자체 실시

Q7**보수총액 통보서 받은 대상자와 신고할 대상자가 달라요.**[【목록으로】](#)**A7) 자격취득상실 지연신고 확인 후, EDI 재전송**

-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대상자 구축(2025. 1. 20. 18:00)이후 자격취득 및 상실 지연신고 시 누락되거나 제외대상이 포함될 수 있음
- 누락 건 등록 후 지사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EDI 재전송

Q8**입력한 게 안보여요.**[【목록으로】](#)**A8) 입력 후 반드시 '임시저장'**

- 입력 후 화면을 닫으시면 저장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닫기 전 '임시저장' 필요

Q9**신고했는데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목록으로】](#)**A9) 기존에 신고한 방법으로 다시 재신고**

- 재신고 시 기존에 신고한 내용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최종으로 신고한 내용으로 처리 후 정산처리내역을 전송함
- ※ 건강보험 웹 EDI, 사회보험 EDI(KT): 기존 신고한 값과 다른 경우 자동 삭제, 그 외는 기정산건 회신

Q10**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목록으로】](#)**A10) EDI서비스 화면의 '보낸문서'에서 확인**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의 '접수' 건수와 '처리결과 정상내역'의 '건강고유' 건수를 클릭 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화면을 보여줌
- ※ 접수 및 처리결과 반영 시간 : 1~24시간

【 EDI '보낸문서' 화면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서식검색 홈 | 로그아웃 | 회원정보수정 | 공인인증서등록 | 서식도움

전체서식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이용안내 자료실 지사찾기

● 신고서식 바로가기

발문문서 상세보기를 하시면 전체보기를 골라주세요.

순번	발문일자	서식명	구분	처를 받은 일자
1				
2				
3				

받은 문서 0건 보낸 문서 1건

신규문서 0건 발송문서 1건

보낸문서 상세보기를 하시면 전체보기를 골라주세요.

순번	보낸일자	서식명	접수	상태
1		직장가입자 보수출액 통보서	2	정상1 / 반송1
2		직장가입자 보수출액 통보서	2	정상2 / 반송0
3		직장가입자 보수출액 통보서	2	정상0 / 반송2

【 EDI '신고문서 목록 및 처리결과' 화면 】

신고문서 목록 및 처리결과

조회기간 : 2023-01-01 ~ 2023-02-28 , 서식명 : 전체 , 주민번호 : -

※ 신고문서의 상세 처리결과 내역은 하단 우측의 숫자를 더블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순번	서식명	신고일자	번호	신고시간	접수	처리결과와 정상내역					처리결과와 반송내역				
							4대공통				건강	4대공통				건강
							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고유	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고유
건강서식	1	직장가입자 보수출액 통보서				5	0	0	0	0	2	0	0	0	0	3
건강서식	2					1	0	0	0	0	1	0	0	0	0	0
건강서식	3	직장가입자 보수출액 통보서				5	0	0	0	0	3	0	0	0	0	2

【 EDI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화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고지유예대상자(유직자등)의 추가징수보험료는 복직시에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반환 보험료"는 즉시 반영됨)

수신일 정산년도

성명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차수 회계 단위기관

부과한 총보험료 보험료 산정

건강	요양	계	연간보수출액	근무월수	보수월액
0	0	0	0		0

확정 보험료 정산 금액

건강	요양	계	정산	건강	요양	계	가입자 부담	건강	요양	계	사용자 부담	건강	요양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아래에서 해당하는 대상자의 값을 선택하시며 상세히 조회하세요. <<성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해당하는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회계 단위기관

전체선택 순번 주민번호 성명 증번호 건강 부과 총보험료 요양 부과 총보험료 부과 총보험료 합계 연간보수출액 근무월수 보수월액

데이터가 없습니다.

구분	순번	주민번호	성명	증번호	건강	부과	총보험료	요양	부과	총보험료	부과	총보험료	합계	연간	보수출액	근무	월수	보수	월액
신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미신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Q11 반송처리된 건은 어떻게 재신고 하나요.

[\[목록으로\]](#)

A11) EDI서비스 화면의 '보낸문서'에서 확인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의 '접수' 건수와 '처리결과 반송내역'의 '건강고유' 건수를 클릭 시 반송 대상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표시함

【 EDI '신고문서 반송처리내역(고유)' 화면 】

신고문서 반송처리내역(고유) * 팝업화면입니다. 화면을 닫을 경우 닫기버튼을 사용하십시오.							
순번	작성일자	서식명	상세처리내역	가입자	가입자주민번호	접수일자	진행구분
1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기정산(기신고금액, 근무월수가 동일한 경우)				반송
2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기정산(기신고금액, 근무월수가 동일한 경우)				반송
3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기정산(기신고금액, 근무월수가 동일한 경우)				반송

- 반송처리내역 화면에서 반송대상자 내역을 파일저장한 후 편집-재작성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기존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조회를 눌러 수신된 문서를 불러옴
- 위에서 편집-재작성한 파일을 파일 올리기하고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비교 후 신고 버튼을 눌러 최초 불러온 대상자 수와 수정 대상자(반송대상자) 수를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완료

Q12 퇴직자가 명단에 있어요.

[\[목록으로\]](#)

A12) 가입자의 자격상실신고 시점과 공단의 연말정산 대상자 구축 시점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격상실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상실자의 경우 대상자 삭제처리 후 전송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화면 】

사업장 EDI서비스		일시저장	신고(전송)/신청	조회	출력	서식달기	도움말	전제해제하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수신일 수신일련번호 작성일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회계 단위기관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 요양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입사일 포함) 노란색 항목 입력 후, 연타키 또는 수정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험료 부과총액(가입자 부담분) 합계 건장 계 수정 이전 다음 파일내리기 파일올리기 대상자삭제 신규입력 조회할 대상자 대역이 없을 경우, 상단 메뉴의 조회버튼을 누르셔서 검색 하신 후, 수신 문서를 열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문서 없을 경우, 관할지사에 보수총액통보서 재전송 요청 후 처리.) 입력완료 후 대상자변환 직책으로 변화면서 수정이 N→Y로 변환. * 아래에서 해당 사람의 열을 선택하여 개인별 내역을 상세시 조회하세요. 회계 단위기관 조회인원 수정인원 조회대상 전체 정렬방법 성명 순번 성명 주민번호 증번호 자격취득일 건장 장기요양 계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가입자 부담분)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 근무월수 수정								

Q13 연말정산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목록으로\]](#)

A13)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화면에서 신청

- 신청구분(개인 신청, 일괄 신청) 선택 후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로 대상자 확인 후 분할횟수 입력
- 신고(전송)버튼을 누르면 완료
 - ※ 정산보험료는 일시납부로 고지되며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산정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납부마감일)까지 신청 가능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은행영업일 2일 전까지)

【 EDI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 신청서' 화면 】

사업장 EDI서비스									
새문서	입시저장	신고(전송)/신청	조회	출력	서식담기	도움말	전체메뉴 열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 신청서 입력 방법은 화면 상, 하단 중 화면 하단 조회된 대상자 선택 후, 화면 상단의 분할횟수 항목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입력 사항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일련번호	--					
신청구분	☒ 개별신청 ☐ 일괄신청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고지년월	___/___		고지차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번호			
분할납부대상보험료	건강보험	당월보험료	정산보험료		분할횟수		회 최대분할가능횟수(회)		
	장기요양보험	당월보험료	정산보험료						
수정 파일내리기 파일올리기 신고(전송) 일괄반영 ※ 파일 내리기를 하여 분할대상자를 파일로 작성하실 경우 분할하지 않는 분(1회 분할)은 명단에서 삭제 후 파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 고지유예(휴복적분할납부)를 신청하여 현재 휴복적분할납부 중인 대상자는 관할지사에 연락 후 정산분할납부를 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수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보험	당월보험료	정산보험료	분할횟수	
								신청	가능

참고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3. 12. 29.>

(8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자국 거주자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득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소득자	⑤ 소 재 지(주소)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⑥ 성 명						
	⑧ 주 소						
I 근로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⑯-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⑰ 국외근로		MOX				
	⑰-1 야간근로수당		OOX				
	⑰-2 출산·보육수당		QOX				
	⑰-4 연구보조비		HOX				
	⑰-5						
	⑰-6						
	~						
	⑰-40 비과세식대		P01				
	⑰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㉑-1 감면소득 계							
III 세액명세	구 분		㉑ 소 득 세	㉒ 지방소득세	㉓ 농어촌특별세		
	㉒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액	㉒ 중(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㉒ 주(현)근무지					
		㉒ 납부특례세액					
	㉒ 차 감 징 수 세 액 (㉒-㉒-㉒-㉒)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사업장		명칭						
		관리번호			전화			
연번	증번호	성 명	생년월일	※ 구분	변 경 내 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2								
3								
4								
5								
6								
7								
8								
9								
10								

※ 구분 : ①보수총액 ②근무월수 중 해당 착오내역 번호 기재
 비고 : 해당년도 기재

첨부서류 (다음 중 선택)

-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 임금대장
- 3.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증빙 관련서류 등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에 대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개별신청 내역]

연번	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구분	분할납부 대상금액 (가입자 부담금)	분할 횟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일괄신청 내역] ※ 분할납부 대상자 전원의 분할횟수를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 작성

회 (외 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수월액보험료(당월 산정보험료를 제외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추가 정수할 정산보험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 신청 가능 횟수: 12회 이내
 - 1회 분할보험료는 분할납부 대상금액을 분할횟수로 균등분할(10원 단위)하며, 균등분할 하였을 때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하여 고지
 - 분할납부중인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잔여 회차 분할보험료와 정산보험료를 퇴직(탈퇴)신고 이후 최초 산정되는 월 보험료에 합산고지
 - 신청기한
 - 당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가능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 ※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결과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를 곁음합니다.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연번	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구분	정산보험료	분할 횟수 (1~12회)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차수 변경 일괄 신청] ※ 분할납부 전원의 분할납부 차수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작성

()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적용된 정산보험료를 위와 같이 차수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 1회부터 12회 이내로 차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분할 적용하고, 균등분할 하였을 때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고지
 - 분할납부중인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잔여 회차 분할보험료와 정산보험료를 퇴직(탈퇴)신고 이후 최초 산정되는 월 보험료에 합산고지
 - 신청기한
 -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은 당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가능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 ※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제69조(보험료)

-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2.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 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 제70조(보수월액)

-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여,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②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③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 ④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원칙)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6>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 ②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3.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 ③ 제1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8.20.>

[시행일: 2025.1.1.]

▶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제목개정 2020.12.29]

▶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①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소득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